

기성회 규약

제1조 (목적) 이 기성회(이하 “회”라 한다)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 교직원의 후생 및 복지와 학교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회는 성결대학교 기성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이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 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의 지급
3.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학생복지시설 지원
5.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이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은 총장의 요청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회원) 이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보통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이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이회에 상당한 금품 등을 희사한 자로 한다.

제7조 (임원과 직무) ①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5인
4. 감 사 1인

②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의 총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감사는 이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정·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총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기성회 규약(5-2-6)

제9조 (회의) ㉠ 이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총회와 이사회로 나누고 각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위임자 포함,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회의의 의결에 있어 2회까지 회의를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출석인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정기회의는 각각 당해 회의에서 정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수리
- ㉡ 총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수입 지출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정.
 4.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무와 회계사무 처리) ㉠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인을 두되, 이는 회장이 본 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이 회의 회계사무는 예산회계관계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은 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 이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는 총장이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가 수리된 후에 징수한다.

제14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

기성회 규약(5-2-6)

이 있을 때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 (재산의 귀속) 이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학교에 기부하여 귀속 시킨다.

제16조 (해산) ① 이 회의는 목적사업의 완수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산하고,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산한다.

② 이 회의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학교와 학교의 관할청에 제출한다.

1. 수입 지출 현계표 (은행 잔고증명서 첨부)
2. 재산목록
3. 청산위원의 명부 및 의결서

제17조 (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청산사무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다만 학교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따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 이 회의 사업과 수입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현재의 재임중인 기성회 임원과 확정되어 집행중인 사업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규약 시행 이전의 기성회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